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 신설(10.20)*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 법령 적기 마련 필요

*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 규정 조항 신설(제2조의2)

- 1)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정
- 2) (범위) 항공기 및 부분품의 생산·수주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설비 투자 및 고용 현황, 자본금 등 항공우주산업 현황 조사
- 3) (시기, 방법) 매년 실시하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의뢰 가능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307,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evi3928@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20-961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류는 그 분량이 수백 쪽에 달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시군구에서 출력과 보관 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제출·보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안 제5조제1항)

- 발주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정보망을 통하여 감리 완료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962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안 제1호)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